KOSHA GUIDE

C - 64 - 2018

4.5 보양

- (1)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, 모르타르 등 붙임 재료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,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블록을 쌓은 후에는 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모르타르, 그라우트 등이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충격 및 기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3) 강우로 인하여 조적한 내부로 빗물이 들어가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, 천막 등 빗물의 침투에 의한 무너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4.6 그 밖의 안전사항

- (1) 벽돌, 블록의 가공, 조적벽체의 면처리 작업을 위하여 둥근톱, 그라인더 등의 기계· 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물을 분무하거나 배기장치를 설치하여 분진발생을 억제하고,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2) 조적벽체의 세척, 방수작업에 고소작업차를 사용할 때에는 평탄한 장소에서 작업 구역을 설정하고,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. 그 밖의 고소작업차에 관한 안전지침은 KOSHA GUIDE M-86-2011(고소작업차 안전운전에 관한 기술지침)에 따른다.
- (3) 염산을 조적벽체 세척작업에 사용할 때에는 3 % 이하의 묽은 염산을 사용하고 보호의, 보안경, 보호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4) 조적벽체에 고압 물청소를 할 때에는 분사노즐의 압력을 2.8~4.9 MPa로 하고, 근로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5) 조적벽체에 샌드 블라스팅에 의한 청소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공기압축기, 압축탱크, 호스, 노즐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보안경, 호흡용보호구 등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